

보도시점 2026. 8. 3.(월) 10:00 / 배포 2026. 8. 3.(월) 08:00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가맹점주단체등록·협의절차 고시 행정예고

- 등록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를 도입한 개정법 시행 위한 세부사항 규정 -
 -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가입으로 등록은 쉽게,
가입률 30% 미만 단체에는 협의 관련 의견수렴 의무화로 대표성은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8.3.부터 2026.9.14.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을 2026.8.3.부터 2026.8.24.까지 행정예고한다.

※ 「단체등록 고시」는 행정규칙(고시)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8.3. ~ 8.24.)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25.12월 개정, ’26.12.31. 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5.9.23.)」 및 국정과제(64번)와 연계 추진된 중점 법개정 사항이다.

※ ’25. 9. 23.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참조

개정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에 등록된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미협의 시 시정명령)하였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그 단체의 적정한 대표성이 문제되어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1)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으로 구성되고, 2)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할 것

※ '25.12. 11.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조

사업자들은 공정위와의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 측은 등록요건의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의 기회 부여의 필요성을, ▲가맹본부 측은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제·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양측의 의견을 조율·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단체의 등록요건, 등록·변경등록 절차, 협의 기준·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 '26. 6. 9.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참고

1. 점주단체 등록제

① 단체 등록을 위한 가맹점주의 최소 가입 비율 및 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조정원)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단체 구성된 브랜드의 가입률 및 운영실태를 감안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만, 비율요건을 10%로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가입자수 하한 설정(30명)을 통해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의견수렴절차(후술)를 마련하여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한다.

<참고> 가맹점수별 분포(24.말) 및 적용 등록요건

가맹점수	~9	10~19	20~29	30~49	50~99	100~199	200~299	300~
본부	74.4%	9.4%	4.3%	4.1%	4.1%	2.0%	0.5%	1.1%
가맹점	3.7%	4.7%	3.8%	5.5%	10.4%	10.2%	4.4%	57.4%
등록요건	-			30명				10%
				(100~60%)	(60~30%)	(30~15%)	(15~10%)	

※ 가맹점수 3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해당 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은 전체의 12.2%로 사각지대 우려는 적어 정책 효율성 제고

② 등록·변경등록 절차

점주단체는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 시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신청서를 공정위(조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기관의 관련 자료 요청 권한 및 등록증 교부 기한 등을 명시한다.

* 단체의 명칭·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에 관한 사항: 30일 이내
구성원의 자격·명부: 변경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등

③ 등록 취소 사유

개정법상 규정된 점주단체 등록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를 제시하여 사업자의 이해를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명의 도용,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를 등록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이 침해되어 단체를 등록한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한다.

2.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

① 협의 기본절차

등록 점주단체(이하 ‘등록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서면 등)을 규정하고, 가맹본부에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부여한다. 협의절차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한다. 아울러,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기한다.

② 의견수렴절차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미가입 가맹점주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전체 가맹점주에 대한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한다. 등록단체는 의견수렴 시 협의 주제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의견,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절차 종료 효과

소모적인 협의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90일) 동안 협의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단일 협의절차에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고, 가맹 거래조건의 종합적·다각적 검토 및 협의절차의 효율화를 기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하여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26. 6. 9.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참고

[붙임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 전문

※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 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8월 24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 반대 · 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 팩스: 044-200-4978 * 전자우편: 60choi@korea.kr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동명 (044-200-4990)
		담당자	사무관	최유경 (044-200-4991)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5조의2(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①</u> <u>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u> <u>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및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그 협의 요청이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2조의6에 따른 약정·동의 등 개별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4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해당 등록</u>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외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협의절차를 종결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의해 개시된 협의절차의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⑦ 제2항에 따라 개시된 협의를 거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협의절차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⑧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를 말한다. 이 경우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는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0명을 말한다.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의4(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변경 등록신청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목적: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3. 구성원의 자격·명부: 변경이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4. 대표자에 관한 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5.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6.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7.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

<신 설>

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의5(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① 법 제1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점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단체를 등록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입을 부당하게 강제·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단체구성권을 침해하여 구성된 단체를 등록한 경우

②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u>할 수 있다.</u>
<u><신설></u>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u>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한 다.</u>
<u>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한다.</u>	<u>③ ----- 법 제39조 제2항제3호----- ----- ----- ----- ---</u>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2.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 호, 2026. 11. ,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및 법 시행령 제 15조의2(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제15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제15조의4(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절차 등), 제15조의5(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① 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단체등록증
2. 협의요청일, 협의요청일 기준 단체 구성원 수 및 협의 주제

②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여부, 구성원 자격 유무, 협의 참석자의 단체 가입 여부, 제3조의 의견수렴 여부 등을 등록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 기한은 해당 확인기간만큼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③ 협의를 개시한 가맹본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의 요청 단체명
2. 협의 요청일 및 협의 주제
3. 협의 일시 및 협의 참석자
4. 협의 주제에 대한 가맹본부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의견
5.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
6. 가맹본부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

④ 협의절차 종료 시, 가맹본부는 14일 이내에 협의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의견수렴절차) ① 협의 요청 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해당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 사실을 공지하고 그 증빙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 요청 단체명, 영업표지 및 대표자
2. 협의 요청일
3. 협의 주제 및 이에 대한 단체의 의견
4. 의견제출 방법

②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절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협의절차에서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가맹본부에 성실히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타 등록단체 협의절차 참여) ① 협의를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외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고 10일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 기한은 해당 준비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1. 협의를 요청한 단체의 명칭
2. 협의 주제
3.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재협의를요청 제한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개시된 복수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절차에 참여하는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회의 시간·장소 등의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협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재협의를요청 제한) 협의를 거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협의절차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협의 요청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한 경우: 180일(제4조에 따라 협의절차 참여 요청을 받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별개의 협의 주제에 대한 경우: 60일(전체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90일)

제6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심사기준) ①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비율 또는 수를 산정할 때, 둘 이상의 단체(등록 심사 진행 중인 단체도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이하 “중복가입자”라 한다)는 그 중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단체에 대해서만 가입 가맹점사업자로 산입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중복가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통보하여 구성원 명부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중복가입자는 관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나의 단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 제출일 기준 먼저 가입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제7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절차 등) 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가 법인인 경우)
2.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
3.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규정
4.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가입신청서 등 가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구성원의 명부(성명·생년월일·가맹점명·연락처 및 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②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변경 등록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심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심사기한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사업자단체 변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심사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가맹본부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전체 가맹점사업자 목록(성명·생년월일·가맹점명·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절차) ①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등록취소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본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단체	단체명	
	소속 가맹본부	영업표지
	단체 구성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동일 영업표지 사용 전체 가맹점사업자 수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가맹점명 · 주소	전화번호
임원	성명	사업자번호
	가맹점명 · 주소	전화번호
	성명	사업자번호
	가맹점명 · 주소	전화번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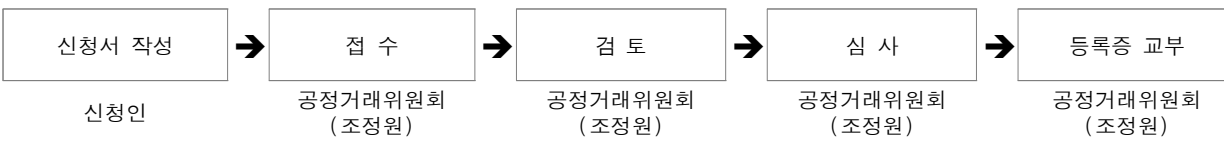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가 법인인 경우) 2.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 3.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규정 4.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의 가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단체 구성원의 명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가맹점사업자단체 변경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단체	단체명		
	소속 가맹본부	영업표지	
	단체 구성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후의 내용>	<변경일>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 · 목적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구성원의 자격 · 명부		
	[]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임원에 관한 사항		
	[] 회의와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변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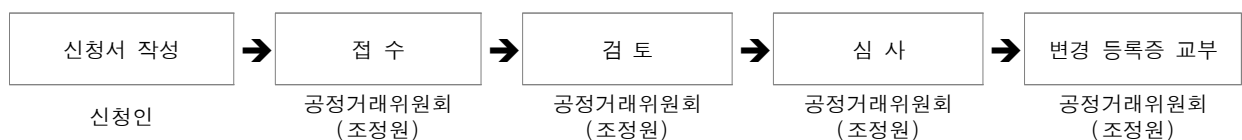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증

1. 단체명 :
2.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
3. 대표자(사업자번호) :
4. 소속 가맹본부(영업포지) :
5. 등록일자 :

위 단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직인

제 호

가맹점사업자단체 변경 등록증

1. 단체명 :
2.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
3. 대표자(사업자번호) :
4. 소속 가맹본부(영업표지) :
5. 변경사항 :
6. 변경 등록일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위 단체의 변경사항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직인